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9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무의 효율성 증대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관광문화재과, 여성가족청소년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7. 6 ~ 7. 2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별표 문화체육국란 위탁사무명중 “대전종합관광안내소”를 “대전관광안내소”로 한다.

별표 보건복지여성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비고
보건복지 여성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제명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6항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u>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u> 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 ⑥ (생략)</p> <p>【별표】</p> <p>민간위탁 대상사무(제4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관부서</th><th style="text-align: center;">위탁사무명</th><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tr> </thead> <tbody> <tr> <td>문화체육국</td><td> 1. <u>대전종합관광안내소</u>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 4. (생략) </td><td></td></tr> <tr> <td>보건복지여성국</td><td> 1.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3. 가출청소년긴급구난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쉼터(남·여)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드림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8.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td><td></td></tr> </tbody> </table>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비고	문화체육국	1. <u>대전종합관광안내소</u>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 4. (생략)		보건복지여성국	1.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3. 가출청소년긴급구난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쉼터(남·여)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드림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8.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p>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대전광역시</u>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별표】</p> <p>민간위탁 대상사무(제4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소관부서</th><th style="text-align: center;">위탁사무명</th><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tr> </thead> <tbody> <tr> <td>문화체육국</td><td> 1. <u>대전과광야내소</u> 2. ~ 4. (현행과 같음) </td><td></td></tr> <tr> <td>보건복지여성국</td><td> 1.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td><td></td></tr> </tbody> </table>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비고	문화체육국	1. <u>대전과광야내소</u> 2. ~ 4.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여성국	1.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비고																	
문화체육국	1. <u>대전종합관광안내소</u>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 4. (생략)																		
보건복지여성국	1.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3. 가출청소년긴급구난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쉼터(남·여)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드림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8.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비고																	
문화체육국	1. <u>대전과광야내소</u> 2. ~ 4.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여성국	1.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관 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이하 "지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 제46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